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1296호 2020년 12월 4일(금)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 설악2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2

공 고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9호선, 중로3-63호선)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 6

○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 12

입법예고

○ 속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 14

발행 :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고시 제2020-169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 설악2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 설악2유원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공간 시설(유원지)
1) 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7	설악2유원지	유원지	설악동 705-54 일원	797,689	강고 제2013-143호 (2013. 4. 26)	쌍천 폐천부지 추가편입
변경	7	설악2유원지	유원지	설악동 705-54 일원	807,492		

2) 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7	설악2유원지	○ 유원지시설 변경 (면적 : 9,803㎡)	○ 하천(쌍천)에서 폐지된 개활지인 제방 바깥쪽 부지(堤外地)를 유원지로 추가편입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나. 설악2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세부시설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시 설 면 적(㎡)						구 성 비 (%)	
				바닥면적			지상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부지 면적	지상 연면적
총 계	797,689	증 9,803	807,492	141,700	증 5,600	147,300	523,100	증 22,800	545,900	100.0	100.0
유희시설	39,065	감 10,905	28,160	11,400	감 3,100	8,300	35,000	감 8,000	27,000	3.5	5.0
운동시설	43,896	감 94	43,802	11,600	감 100	11,500	37,300	감 100	37,200	5.4	6.8
휴양시설	193,899	-	193,899	57,800	감 100	57,700	251,300	감 100	251,200	24.0	46.0
특수시설	126,011	증 19,459	145,470	33,300	증 5,500	38,800	108,600	증 17,100	125,700	18.0	23.0
편익시설	80,263	증 13,756	94,019	23,700	증 3,500	27,200	79,500	증 13,600	93,100	11.6	17.1
관리시설	104,194	감 8,040	96,154	3,100	증 100	3,200	10,600	증 500	11,100	12.0	2.0
기타시설	210,361	감 4,373	205,988	800	감 200	600	800	감 200	600	25.5	0.1

2) 설악2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7	설악2 유원지	◦ 내 용 : 기존 결정된 유원지 세부 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 설악2유원지 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침체된 설악동의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기 결정된 세부 조성계획에 대하여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일부구간의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설악2유원지의 원활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시설번호			시 설 명	부 지 면 적(㎡)			시 설 규 모(㎡)						층 수 (층 이하)		비고
							바닥면적(㎡)			지상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797,689	증 9,803	807,492	141,700	증 5,600	147,300	523,100	증 22,800	545,900	-	-	
	유 희 시 설			39,065	감 10,905	28,160	11,400	감 3,100	8,300	35,000	감 8,000	27,000	-	-	
	A-1	A-1	물고기놀이터 & 물놀이장	8,747	-	8,747	2,600	-	2,600	8,700	-	8,700	5	5	
	A-2	A-2	설악산 VR영상관	7,428	-	7,428	2,200	-	2,200	7,400	-	7,400	5	5	
	A-3	A-3	VR 트램정류장 1	780	-	780	200	-	200	700	-	700	5	5	
	A-4	A-4	VR 트램정류장 2	1,812	-	1,812	500	-	500	900	-	900	5	5	
	A-5	A-5	Green Mall 1	7,942	증 1,451	9,393	2,300	증 500	2,800	7,900	증 1,400	9,300	5	5	
	A-6	-	Green Mall 2	6,528	감 6,528	-	1,900	감 1,900	-	6,500	감 6,500	-	5	-	폐지
	A-7	-	VR 트램정류장 3	5,828	감 5,828	-	1,700	감 1,700	-	2,900	감 2,900	-	5	-	폐지
	운 동 시 설			43,896	감 94	43,802	11,600	감 100	11,500	37,300	감 100	37,200	-	-	
	B-1	B-1	다목적운동장 & 야외공연장	7,089	감 94	6,995	700	감 100	600	700	감 100	600	3	3	
	B-2	B-2	연금공단(운동시설 1)	9,498	-	9,498	2,800	-	2,800	9,400	-	9,400	3	3	
	B-3	B-3	연금공단(운동시설 2)	11,963	-	11,963	3,500	-	3,500	11,900	-	11,900	3	3	
	B-4	B-4	연금공단(운동시설 3)	15,346	-	15,346	4,600	-	4,600	15,300	-	15,300	3	3	

시설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규모(㎡)						층수(층)		비고
						바닥면적(㎡)			지상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휴 양 시 설				**193,899**	**-**	**193,899**	**57,800**	**감 100**	**57,700**	**251,300**	**감 100**	**251,200**	**-**	**-**	
	C-1	C-1	펜션단지 1	13,224	-	13,224	3,900	-	3,900	13,200	-	13,200	5	5	
	C-2	C-2	생활형숙박시설 1	18,114	-	18,114	5,400	-	5,400	27,100	-	27,100	15	15	
	C-3	C-3	펜션단지 2	16,111	-	16,111	4,800	-	4,800	16,100	-	16,100	5	5	
	-	C-4	펜션단지 3	-	증 12,691	12,691	-	증 3,800	3,800	-	증 12,600	12,600	-	5	신설
	C-5	C-5	생활형숙박시설 2	45,058	감 30,055	15,003	13,500	감 9,000	4,500	67,500	감 45,000	22,500	18	18	
	C-4	C-6	생활형숙박시설 3	13,683	증 16,069	29,752	4,100	증 4,800	8,900	13,600	증 31,000	44,600	5	18	
	-	C-7	단독형 펜션	-	증 992	992	-	증 200	200	-	증 900	900	-	5	신설
	C-6	C-8	생활형숙박시설 4	52,590	감 32,755	19,835	15,700	감 9,800	5,900	78,800	감 49,100	29,700	18	18	분리
	-	C-9	생활형숙박시설 5	-	증 33,058	33,058	-	증 9,900	9,900	-	증 49,500	49,500	-	18	
	C-7	C-10	연금공단(휴양시설 1)	16,536	-	16,536	4,900	-	4,900	16,500	-	16,500	5	5	
	C-8	C-11	연금공단(휴양시설 2)	18,583	-	18,583	5,500	-	5,500	18,500	-	18,500	7	7	
특 수 시 설				**126,011**	**증 19,459**	**145,470**	**33,300**	**증 5,500**	**38,800**	**108,600**	**증 17,100**	**125,700**	**-**	**-**	
	D-1	D-1	추양기념관	3,652	증 90	3,742	1,000	증 100	1,100	3,600	증 100	3,700	5	5	
	D-2	D-2	애국지사기념관	3,136	증 4	3,140	900	-	900	3,100	-	3,100	5	5	
	D-3	D-3	3.1운동 기념박물관	2,501	증 168	2,669	700	증 100	800	2,500	증 100	2,600	5	5	
	D-4	D-4	야외조각전시·관람장	16,526	증 787	17,313	4,900	증 200	5,100	16,500	증 800	17,300	5	5	
	D-5	D-5	체험의 숲 1	7,787	증 628	8,415	700	증 100	800	700	증 100	800	5	5	
	D-6	D-6	체험의 숲 2	10,899	증 1,875	12,774	1,000	증 200	1,200	1,000	증 200	1,200	5	5	
	D-7	D-7	문화생태체험장	19,998	감 10,170	9,828	5,900	감 3,000	2,900	19,900	감 10,100	9,800	5	5	분리
	-	D-8	자연휴식시설 1	-	증 10,170	10,170	-	증 3,000	3,000	-	증 10,100	10,100	-	5	
	D-8	D-9	미술관	11,909	증 2,294	14,203	3,500	증 700	4,200	11,900	증 2,300	14,200	5	5	
	D-9	-	어린이박물관	3,428	감 3,428	-	1,000	감 1,000	-	3,400	감 3,400	-	5	-	폐지
	D-10	-	야외음악당	9,271	감 9,271	-	2,700	감 2,700	-	9,200	감 9,200	-	3	-	폐지
	-	D-10	자연휴식시설 2	-	증 7,143	7,143	-	증 2,100	2,100	-	증 7,100	7,100	-	2	신설
	-	D-11	자연휴식시설 3	-	증 12,693	12,693	-	증 3,800	3,800	-	증 12,600	12,600	-	2	신설
	-	D-12	자연휴식시설 4	-	증 6,010	6,010	-	증 1,800	1,800	-	증 6,000	6,000	-	2	신설
	-	D-13	온천공	-	증 464	464	-	증 100	100	-	증 400	400	-	1	신설
	D-11	D-14	다목적광장	20,044	-	20,044	6,000	-	6,000	20,000	-	20,000	3	3	
	D-12	D-15	연금공단(특수시설)	16,862	-	16,862	5,000	-	5,000	16,800	-	16,800	3	3	
편 익 시 설				**80,263**	**증 13,756**	**94,019**	**23,700**	**증 3,500**	**27,200**	**79,500**	**증 13,600**	**93,100**	**-**	**-**	
	E-1	E-1	근린생활시설 1	6,698	-	6,698	2,000	-	2,000	6,600	-	6,600	5	5	
	E-2	E-2	음식점거리 1	4,082	-	4,082	1,200	-	1,200	4,000	-	4,000	5	5	
	E-3	E-3	음식점거리 2	2,733	-	2,733	800	-	800	2,700	-	2,700	5	5	
	E-4	E-4	음식점거리 3	3,034	-	3,034	900	-	900	3,000	-	3,000	5	5	
	E-5	E-5	헬스케어센터	10,289	-	10,289	3,000	-	3,000	10,200	-	10,200	5	5	
	E-6	E-6	인삼스파	5,525	-	5,525	1,600	-	1,600	5,500	-	5,500	5	5	
	E-7	E-7	근린생활시설 2	11,693	-	11,693	3,500	-	3,500	11,600	-	11,600	5	5	
	E-8	E-8	근린생활시설 3	21,120	감 10,368	10,752	6,300	감 3,100	3,200	21,100	감 10,400	10,700	5	5	
	E-9	-	근린생활시설 4	4,886	감 4,886	-	1,400	감 1,400	-	4,800	감 4,800	-	5	-	폐지
	E-10	-	근린생활시설 5	3,376	감 3,376	-	1,000	감 1,000	-	3,300	감 3,300	-	5	-	폐지
	-	E-9	근린생활시설 4	-	증 3,306	3,306	-	증 900	900	-	증 3,300	3,300	-	5	신설
	-	E-10	근린생활시설 5	-	증 4,550	4,550	-	증 1,300	1,300	-	증 4,500	4,500	-	5	신설

시설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규모(㎡)						층수(층)		비고
							바닥면적(㎡)			지상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E-11	E-11	근린생활시설 6	2,062	감 76	1,986	600	감 100	500	2,000	감 100	1,900	5	5	
	-	E-12	근린생활시설 7	-	증 7,934	7,934	-	증 2,300	2,300	-	증 7,900	7,900	-	5	신설
	-	E-13	근린생활시설 8	-	증 3,988	3,988	-	증 1,100	1,100	-	증 3,900	3,900	-	5	신설
	-	E-14	근린생활시설 9	-	증 2,532	2,532	-	증 700	700	-	증 2,500	2,500	-	5	신설
	-	E-15	근린생활시설 10	-	증 2,426	2,426	-	증 700	700	-	증 2,400	2,400	-	5	신설
	-	E-16	근린생활시설 11	-	증 1,115	1,115	-	증 300	300	-	증 1,100	1,100	-	5	신설
	-	E-17	근린생활시설 12	-	증 3,306	3,306	-	증 900	900	-	증 3,300	3,300	-	5	신설
	-	E-18	근린생활시설 13	-	증 3,305	3,305	-	증 900	900	-	증 3,300	3,300	-	5	신설
	E-12	E-19	연금공단(편익시설)	4,765	-	4,765	1,400	-	1,400	4,700	-	4,700	3	3	
	관 리 시 설			**104,194**	**감 8,040**	**96,154**	**3,100**	**증 100**	**3,200**	**10,600**	**증 500**	**11,100**	**-**	**-**	
	F-1	F-1	도 로	48,140	감 8,640	39,500	-	-	-	-	-	-	-	-	
	F-2	F-2	공공주차장 1	2,296	-	2,296	-	-	-	-	-	-	-	-	
	F-3	F-3	공공주차장 2	1,660	-	1,660	-	-	-	-	-	-	-	-	
	F-4	F-4	공공주차장 3	10,032	-	10,032	-	-	-	-	-	-	-	-	
	F-5	F-5	환승센터	3,214	증 745	3,959	900	증 200	1,100	3,200	증 700	3,900	5	5	
	F-6	F-6	관광지원안내소	7,439	감 145	7,294	2,200	감 100	2,100	7,400	감 200	7,200	5	5	
	F-7	F-7	연금공단(관리시설)	31,413	-	31,413	-	-	-	-	-	-	-	-	
	기 타 시 설			**210,361**	**감 4,373**	**205,988**	**800**	**감 200**	**600**	**800**	**감 200**	**600**	**-**	**-**	
	G-1	G-1.1	기타시설 1(30m 녹지 1)	58,607	감 44,279	14,328	-	-	-	-	-	-	-	-	분리
		G-1.2	기타시설 1(30m 녹지 2)	-	증 41,694	41,694	-	-	-	-	-	-	-	-	
	G-2	G-2	기타시설 2(메모리얼파크)	8,631	감 2,405	6,226	800	감 200	600	800	감 200	600	3	3	
	G-3	G-3.1	기타시설 3(사유지 1)	117,452	감 73,858	43,594	-	-	-	-	-	-	-	-	분리
		G-3.2	기타시설 3(사유지 2)	-	증 15,415	15,415	-	-	-	-	-	-	-	-	
		G-3.3	기타시설 3(사유지 3)	-	증 16,398	16,398	-	-	-	-	-	-	-	-	
		G-3.4	기타시설 3(사유지 4)	-	증 574	574	-	-	-	-	-	-	-	-	
		G-3.5	기타시설 3(사유지 5)	-	증 25	25	-	-	-	-	-	-	-	-	
		G-3.6	기타시설 3(사유지 6)	-	증 32,556	32,556	-	-	-	-	-	-	-	-	
	G-4	G-4.2	연금공단(기타시설 1)	-	증 9,508	9,508	-	-	-	-	-	-	-	-	분리
		G-4.2	연금공단(기타시설 2)	25,671	감 1	25,670	-	-	-	-	-	-	-	-	

속초시 공고 제2020-1142호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9호선, 중로3-63호선)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1.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9호선, 중로3-63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서의 열람을 실시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4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장사동 286-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9호선, 중로3-63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9호선, 중로3-63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솔마루개발 주식회사 대표 고혜진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724호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규 모				사용 형태	기능	기점	종점	전체연장 (m)	금회연장 (m)	기개설 연장(m)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도로	중로	1	19	20~29	일반 도로	보조 간선	노학동 720-10	장사동 산17-2	2,210	1,096	1,114	
도로	중로	3	63	12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장사동 302-3	장사동 산31	209	209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 ~ 2020. 09. 30.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1. 09. 30.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0. 12. 4. ~ 2020. 12. 18.
   ◦ 장소: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명	시설의 세분	시설규모	면적	비고
도로	중로1-19호선	B=20~29m, L=1,096m	41,041㎡	도시계획도로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중로3-63호선	B=12m, L=209m	4,603㎡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 토지조서(중로1-19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도시계획내	도시계획외	합 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1	장사동	286-2	제	487	70	-	70	속초시	-				변경없음
2	장사동	286-6	답	54	32	-	32	속초시	-				변경없음
3	장사동	286	답	2,342	-	170	170	최*문	속초시 교동 767-257 프레지던트인텔빌라트 ***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속초시지부)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없음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본점영업부)	근저당권	
4	장사동	286-5	답	1,326	990	-	990	속초시	-				변경없음
5	장사동	395-8	구	74	58	16	74	국토교통부	-				변경없음
6	장사동	285	답	314	294	20	314	속초시	-				변경없음
7	장사동	산28-5	임	1,978	1,978	-	1978	속초시	-				변경없음
8	장사동	산28-2	임	7,708	-	1,149	1,149	정*자 외 2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30*동 ****호	서울시 산림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243(길동)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없음
9	장사동	산28-3	임	1,136	1,136	-	1,136	속초시	-				변경없음
10	장사동	산28-4	임	241	-	81	81	박*봉	속초시 동명동 465-*				변경없음
11	장사동	산25-2	임	1,783	-	577	577	송*수 외 1인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0가길 1, ***호				변경없음
12	장사동	산25-1	임	1,977	1,977	-	1,977	속초시	-				변경없음
13	장사동	산26-1	임	1,698	1,698	-	1,698	속초시	-				변경없음
14	장사동	산26-2	임	1,076	51	-	51	㈜태평유아이	속초시 번영로 170, 614호				당초
				1,076	51	-	51	㈜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변경
15	장사동	302-4	임	11,833	34	-	34	㈜태평유아이	속초시 번영로 170, 614호				당초
				11,833	34	-	34	㈜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변경
16	장사동	302-3	임	6,684	29	-	29	이*술 외 1인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8길, 10*동 ****호				당초
				6,684	29	-	29	㈜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도시계획내	도시계획외	합 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17	장사동	산27-3	임	2,028	2,028	-	2,028	속초시	-				변경없음
18	장사동	산26-3	임	147	147	-	147	속초시	-				변경없음
19	장사동	302-14	임	3,306	-	138	138	이*술 외 1인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8길, 10*동 ****호				변경없음
20	장사동	302-2	임	9,990	-	494	494	이*술 외 1인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8길, 10*동 ****호				변경없음
21	장사동	395-11	구	546	20	-	20	국토교통부	-				변경없음
22	장사동	405-5	학	69,454	-	114	114	강원도(교육감)	-				변경없음
23	장사동	산20-1	구	378	196	48	244	속초시	-				변경없음
24	장사동	395-10	구	247	119	8	127	국토교통부	-				변경없음
25	장사동	286-1	제	213	199	14	213	속초시	-				변경없음
26	장사동	286-3	구	21	-	8	8	속초시	-				변경없음
27	장사동	395-9	구	124	-	8	8	국토교통부	-				변경없음
28	장사동	산21-1	임	370	42	78	120	속초시	-				변경없음
29	장사동	285-1	전	1,797	31	388	419	조*구	속초시 장사동 9*				변경없음
30	장사동	285-3	답	289	289	-	289	속초시	-				변경없음
31	장사동	산28	임	1,964	-	372	372	박*봉	속초시 동명동 465-*				변경없음
32	장사동	산25	임	11,017	-	647	647	송*수 외 1인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0가길 1, ***호				변경없음
33	장사동	산26	임	11,062	1,039	-	1,039	정*천	강릉시 강변로440번길 30, 10*동 ***호				당초
				11,062	1,039	-	1,039	㈜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변경
34	장사동	276-1	답	600	600	-	600	속초시	-				변경없음
35	장사동	276	답	826	431	-	431	정*천	강릉시 강변로440번길 30, 10*동 ***호				당초
				826	431	-	431	㈜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변경
36	장사동	276-2	답	1,222	186	225	411	정*천	강릉시 강변로440번길 30, 10*동 ***호				당초
				1,222	186	225	411	㈜무궁화	서울시 강남구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도시계획내	도시계획외	합 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신탁	테헤란로 134, 22층				
37	장사동	276-3	임	583	33	392	425	정*천	강릉시 강변로440번길 30, 10*동 ***호				당초
				583	33	392	425	㈜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변경
38	장사동	302-5	임	1,650		487	487	최*철	속초시 미시령로 3359번길 4, 20*동 ***호	양양속초산림조합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13	지상권 근저당권	변경 없음
39	장사동	산27-4	임	1,938	1,938	-	1,938	속초시	-				변경 없음
40	장사동	302-6	임	739	-	134	134	김*경	속초시 부월1길 1* (조양동)				변경 없음
41	장사동	302-10	도	381	-	67	67	김*경 외 6인	속초시 부월1길 1* (조양동)				변경 없음
42	장사동	302-1	임	650	-	85	85	박*희	속초시 미시령로 3359번길 9, *동 ***호				변경 없음
43	장사동	산27-6	임	163	160	3	163	속초시	-				변경 없음
44	장사동	304-52	구	2,668	126	71	197	국토교통부	-				변경 없음
45	장사동	273-3	답	1,353	1,353	-	1,353	속초시	-				변경 없음
46	장사동	273-2	답	923	-	274	274	어*훈	속초시 장사동 26*	속초농업협동조합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21 (교동)	근저당권	변경 없음
47	장사동	273-1	답	4,708	-	29	29	이*근	속초시 장사동 23*				변경 없음
48	장사동	271	전	559	192	121	313	최*기	속초시 동해대로 4271, 10*동 ***호				변경 없음
49	장사동	산56	임	38,281	2,216	5,171	7,387	㈜랜드로 외 8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도공원1로 49, 205-3	대전광역시 서구청		압류 (허석)	변경 없음
50	장사동	205	전	565	189	268	457	권*호	춘천시 퇴계동 916-1, 현진아파트 10*동 ***호				변경 없음
51	장사동	204	전	605	369	218	587	이*복	속초시 장천마을길 7-* (장사동)				변경 없음
52	장사동	203	전	641	27	278	305	탁*만	속초시 장사동 22*				변경 없음
53	장사동	산62	임	2,876	796	1,538	2,334	이*구	고성군 토성면 운봉리 195-2				변경 없음
54	장사동	산61	임	1,686	206	431	637	김*수	동명동 530-*				당초
				1,686	206	431	637	김*수	동명동 530-*				변경
								김*수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8길 58, 10*동 ***호				
55	장사동	207	도	231	66	81	147	속초시	-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도시계획내	도시계획외	합 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없음
56	장사동	195	답	3,207	1,081	826	1,907	대한불교조계종신흥사	속초시 설악동 170				변경 없음
57	장사동	196	답	1,849	-	5	5	대한불교조계종신흥사	속초시 설악동 170				변경 없음
58	장사동	194	전	3,698	301	165	466	김＊윤	춘천시 퇴계로 220-20, 30*동 ****호				변경 없음
59	장사동	194-1	도	2,698	129	51	180	속초시	-				변경 없음
60	장사동	산27-5	임	2,480	-	329	329	㈜굿모닝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속초시 중앙로 182-1 (중앙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속초시지부)	근저당권	변경 없음
										유＊영	강원도 속초시 온정로1길 11-8, 10*동 ***호	근저당권	
61	장사동	산27-7	임	629	602	27	629	속초시	-				변경 없음
62	장사동	산27-2	구	1,781	262	125	387	속초시	-				변경 없음
63	장사동	273	답	1,922	-	443	443	어＊훈	속초시 장사동 26*	속초농업협동조합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21 (교동)	근저당권	변경 없음
64	장사동	304-48	구	4,661	86	39	125	국토교통부	-				변경 없음
65	장사동	270	전	486	52	64	116	어＊훈	속초시 장사동 26*	속초농업협동조합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21 (교동)	근저당권	변경 없음
66	장사동	206	전	162	55	107	162	권＊호	춘천시 퇴계동 916-1, 현진아파트 10*동 ***호				변경 없음
67	장사동	산63	임	9,421	-	380	380	김＊주	속초시 장사동 23*	속초농업협동조합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21 (교동)	근저당권	변경 없음
68	장사동	307-1	도	10,527	209	105	314	국토교통부					당초
				10,100	209	105	314	국토교통부					변경
69	장사동	194-3	구	243	34	16	50	속초시	-				변경 없음
합계				261,276	24,156	16,885	41,041						당초
				260,849	24,156	16,885	41,041						변경

■ 토지조서(중로3-63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도시계획내	도시계획외	합 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1	장사동	302-3	임	6,684	1,972	-	1,972	이＊술	서울시 구로구				당초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도시계획내	도시계획외	합 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외 1인	경인로 8길, 10*동 ****호				
				6,684	1,972	-	1,972	㈜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변경
2	장사동	302-14	임	3,306	13	998	1,011	이*술 외 1인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8길, 10*동-****호				변경없음
3	장사동	산53	임	14,975	807	698	1,505	노*래	과천시 별양동 6, 주공아파트 50*동 ***호				당초
				14,975	807	698	1,505	노*래	과천시 별양동 6, 주공아파트 50*동 ***호				변경
								㈜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4	장사동	산31	임	26,192	-	115	115	강*숙	강릉시 강동면 정동역길 *	양양농업협동조합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5길 17	근저당권	변경없음
합계				51,157	2,792	1,811	4,603						변경없음

■ 지장물조서

순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장사동 산62	창고	스레트/목재	74.2	㎡	고성군 토성면 운봉리 195-*	이*구				변경없음
		창고		22.5	㎡						

속초시 공고 제2020－1146호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04일

속 초 시 장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나. 도로위치 : 속초시 도문동 731-6번지

다. 공고방법 : 속초시공보, 홈페이지,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20. 12. 04. ~ 12. 18. (14일간)

마. 도로 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허가번호 (허가 통보일)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731-6	전	780	54	김성희	도문동 731-6번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2020-건축과-신축신고-44 (2020년 07월 13일)	건축주 : 김성희

마.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바. 관계도서 : 속초시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사. 문의사항 : 건축과 건축허가팀(033-639-2457)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 치 도	축 척 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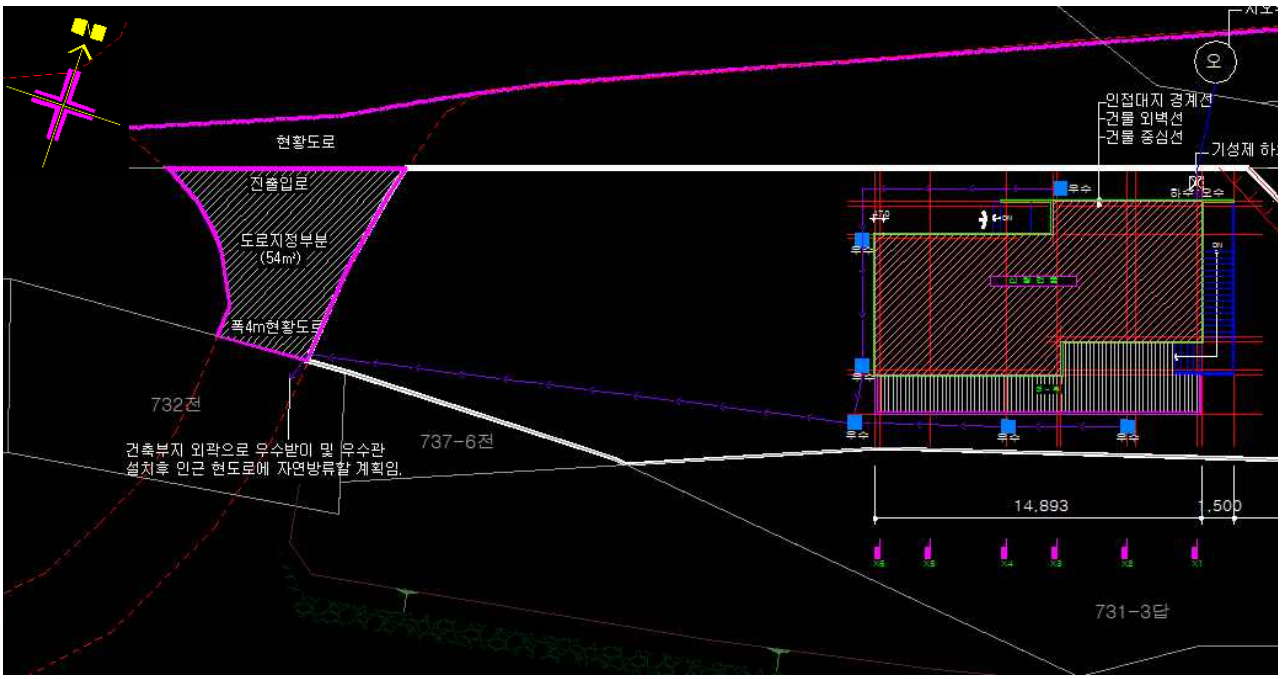

도로 지정 현황도	축 척 NONE

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44호

「속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관인생략)

속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11. 28. ~ 2020. 12. 3.(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2월 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유혜정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유혜정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11. .

발 의 자 : 유혜정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속초시의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대상 (안 제3조)

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2조)

3.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오염물질을 말한다.
5.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한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

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의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따른다.

제9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에 따른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차량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차. 생략

3~6. 생략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권

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측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